

대법원 2021. 8. 12 선고 2021다235057 판결 [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1. 8. 12 선고 2021다235057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1. 4. 22 선고 2020나565 판결

전 문

원고, 상고심당사자 주식회사 A

원고승계참가인, 상고심당사자
주식회사 B

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, 피상고인
C 유한회사

피고, 상고인 D

판 결 선 고 2021. 8. 12.

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. 4. 22. 선고 2020나565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본다.

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.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조재연, 대법관 민유숙, 주 심 대법관 이동원, 대법관 천대엽